

운영규정 개요

1. 입소정원

정 원	총 원	사랑동	소망동
	24명	11명	13명
현 원	총원	사랑동	소망동
	24명	11명	13명

2. 입소계약

- ①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
- ②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정원 내에 한하여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결정

3. 입소절차

● 일반 입소절차

- ①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한다.
- ② 등급을 받은 후 시설을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한다.
- ③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계약서 작성 후 입소

● 기초생활수급자 입소

- ①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한다.
- ② 등급을 받은 후 해당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"장기요양입소의뢰서"제출
- ③ 관련 구비서류 관할 구청에서 검토 후 승인
- ④ 구청에서 승인이 되면 신청 요양원으로 서류제출
- ⑤ "장기요양입소의뢰서" 받은 후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과 상담
- ⑥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계약서 작성 후 입소

4. 입소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① 표준이용계획서 사본 1부.
- ②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.
- ③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1부.
- ④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- ⑤ 전염성질환관련 건강진단서 1부.

5. 입소계약 해제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10일 이상 병원에 입원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 장기 외박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한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
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6. 입소자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 존중

시설의 직원들은 입소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.

7.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

- ① 입소자의 외출·외박은 원천적으로 입소자 및 보호자의 결정에 의하며 자유롭게 할 수 있다.
- ② 입소자는 30분 이상의 외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, 외출기록부 작성 및 담당직원에게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후 외출하여야 한다.
- ③ 입소자의 외출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.
- ④ 입소자가 외출 및 외박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시설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.
- ⑤ 입소자가 외출 및 외박시간을 초과하고도 통보치 않을 경우는 무단 외출로 간주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.
- ⑥ 시설 직원이 동행하는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은 직원의 출장보고로 가름할 수 있다.
- ⑦ 보호자가 동행하는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은 보호자가 외출 확인증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⑧ 시설장은 입소자의 안전과 교육 등 필요한 경우에 외출과 외박을 불허할 수 있다.

8. 의료서비스 처리절차

① 간호(조무)사의 활동사항

가. 간호(조무)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
나.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, 체중, 혈압, 체온,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다. 간호(조무)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라. 간호(조무)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.

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

가.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.

나.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(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)를 취한다.

다.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라.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하늘마루효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,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가.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

-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.

-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.

-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나.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

-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
-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하늘마루효요양원 직원이

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,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.
다.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

- 가벼운 질병 등(내과, 이비인후과 등)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발생 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-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(정기, 수시)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.

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.

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

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.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.

9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- ①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,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. 단,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.

10.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-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
-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-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